

# 2022. 6. 1.(수)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

시행일정	요일	실시사항	기준일	관계법조
'22. 1. 15.까지	토	인구수 등의 통보	인구의 기준일(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) 후 15일까지	법§4, §60의2① 규§2①②, §118①
1. 22.까지	토	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 예비후보자정보물 발송수량 공고	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	규§51①② 규§26의2③
2. 1.부터	화	<b>예비후보자등록 신청</b> [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	선거일 전 120일부터	법§60의2①
2. 18.부터	금	<b>예비후보자등록 신청</b> 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	법§60의2①
3. 3.까지	목	각급선거위원회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	선거일전 90일까지	법§60②
		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	선거일전 90일까지(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: 5.2(월))	법§53①②
3. 3.부터 6. 1.까지	목 수	의정활동 보고 금지	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	법§111
3. 20.부터	일	<b>예비후보자등록 신청</b> [군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	법§60의2①
4. 2.부터 6. 1.까지	토 수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	법§86②
5. 10.부터 5. 14.까지	화 토	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	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	법§37, 규§10 법§38, 규§11 법§65⑤
5. 12.부터 5. 13.까지	목 금	<b>후보자등록 신청</b> (매일 오전9시 ~ 오후6시)	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	법§49 규§20
5. 18.까지	수	선거벽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	법§64② 규§29④
5. 19.	목	<b>선거기간개시일</b>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	법§33③
5. 19.부터 5. 31.까지	목 화	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 개최	선거운동기간중	법§82의2
5. 20.까지	금	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첨부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	법§65⑥ 규§30⑤ 법§64② 규칙§29②⑤
5. 20.에	금	선거인명부 확정	선거일전 12일에	법§44①
5. 22.까지	일	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 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	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	법§147⑧ 법§65⑥, 154①⑤, 규§77 법§65⑥, 153①, 규§76
5. 27.부터 5. 28.까지	금 토	<b>사전투표</b> 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) ※ 코로나19 격리자등 유권자 : 5. 28.(토) 오후 6:30 ~ 오후 8:00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	법§155②, §158
6. 1.	수	<b>투표</b> (오전 6시 ~ 오후 6시) ※ 코로나19 격리자등 유권자 : 오후 6:30 ~ 오후 7:30 <b>개표</b> (투표종료후 즉시)	선거일	법 제10장 법 제11장
6. 13.까지	월	선거비용 보전청구	선거일후 10일까지(가산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	법§122의2①, 민법§161 규§51의3①
7. 31.이내	일	선거비용 보전	선거일후 60일이내	법§122의2① 규§51의3②